

# 「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3. 8. 7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3. 9. 10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13. 9. 10(화)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농촌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활력있고 역동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년단체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·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안의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관내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·홍보비·일반운영비, 교육경비,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
- “청년단체” 등 자원봉사단체나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

지원은 『지방재정법』 및 『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』, 『평창군  
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』가 근거 법령이라 할 수 있으며

- 본 청년단체에 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원을 명문화  
함은 물론 지원예산인 “사회단체 보조금”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 
“운영비”를 지원하고자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본 조례가 지원된다 해도 별도 예산편성없이 “사회단체 보조금  
예산액”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, 면적,인구수  
를 반영하여 산출한 우리군 2013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액은  
464,036천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- 현재 지원대상 청년단체는 관내 6개 청년단체이나 조례상 20인  
이상만 구성하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앞으로 지원  
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 
따라서 한정된 “사회단체 보조금”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 
문제와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
하겠습니다.
- 청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우리군이  
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

##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#### **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**

##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- 현 조례는 20명이상만 구성하면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무분별한 지원신청이 예상되는 바, 지원범위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

##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청년"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소를 가진 남녀를 말한다.
2. "청년단체"란 20명 이상의 청년회원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(정치,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경비 지원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, 홍보비 또는 일반운영비
2.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
3.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4조(표창 등)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

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「평창군 포상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) 청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, 지급,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」 및 「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